

의안번호	제 2013 - 13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5. 7. (제49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위원회 개관	1
1. 설립 배경 및 연혁	1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2
3. 조직	2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4
II. 제3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5
1. 제3기 양형위원회 설립 경과	5
2. 제3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5
2. 제3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6
III. 제4기 양형위원회 구성	14
1. 양형위원회	14
2. 전문위원	15
3. 자문위원	16
IV. 2013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7
1.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 지원	17
2. 『2013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17
3. 『2012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17

I. 양형위원회 개관

1. 설립배경 및 연혁

가. 설립 배경

-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건의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 26.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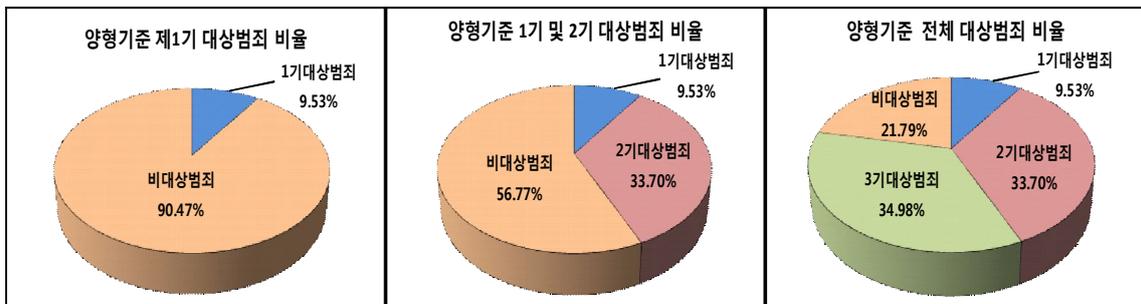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4. 27. 시행되어 같은 날 양형위원회 출범
- 출범 이후 활동 경과
 - 1기 양형위원회(2007. 4. 27. ~ 2009. 4. 26., 위원장 김석수)
 - 2009. 4. 24.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2009. 7. 1. 시행
 - 2기 양형위원회(2009. 4. 27. ~ 2011. 4. 26., 위원장 이규홍)
 - 2010. 6. 29.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0. 7. 15. 시행
 - 2011. 3. 21.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2011. 7. 1. 시행
 - 2011. 3. 21.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1. 4. 15. 시행
 - 3기 양형위원회(2011. 4. 27. ~ 2013. 4. 26., 위원장 이기수)

- 2012. 1. 30.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2. 3. 16. 시행
 - 2012. 6. 18.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2. 7. 1. 시행
 - 2012. 8. 20.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2. 9. 1. 시행
 - 2013. 2. 4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3. 7. 1. 시행 예정)
 - 2013. 4. 22.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살인범죄 양형기준 2013. 5. 15., 성범죄 양형기준 2013. 6. 19. 각 시행 예정)
- 제1, 2, 3기 양형기준 설정 현황(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율)

[1기 양형기준]

[1기+2기 양형기준]

[1+2+3기 양형기준]



누적비율 : **9.5%**

누적비율 : **43.2%**

누적비율: **78.2%**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

3. 조직

가. 위원장 및 위원

- 대법원장이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검사 2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2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 위촉)

나.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둠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 1년, 연임 가능
- 현재 법관 3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

[수석전문위원 1인, 1팀장 : 법관, 2팀장 : 검사]

다.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단 설치
- 운영지원단은 운영지원단장(판사)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29명(15명의 양형자료분석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통계직렬 실무관 2명 포함)

라. 자문위원

-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현재 11명)

마. 조직도

[조직도]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		
2	양형기준안 의결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3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4	공청회 및 의견조치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치 절차를 진행
↓		
5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II. 제3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제3기 양형위원회 설립 경과

- 2011. 4. 27. 출범하여 2011. 5. 2.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임명장 수여식 시행 후 공식일정 시작

2. 제3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가. 양형위원회

【 위원 명단 】

(2013. 4. 기준)

지위	성명	생년월일	기수	비고
위원장	이 기 수	1945. 12. 30.		전 고려대 총장
위원 (법관)	조 병 현	1955. 3. 2.	연수원 11기	서울고등법원장
	여 상 훈	1956. 7. 25.	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기 정	1962. 11. 14.	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진 만 (상임위원)	1964. 3. 26.	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채 동 욱	1959. 1. 2.	연수원 14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 건 리	1963. 6. 11.	연수원 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 태 섭	1963. 7. 1.	연수원 16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 광 수	1961. 12. 31.	연수원 17기	변호사
위원 (교수)	이 상 원	1960. 12. 7.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 태 훈	1958. 2. 17.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이 응 모	1954. 7. 20.		SBS 보도본부장
	이 연 주	1960. 10. 20.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운영위원장

나. 소위원회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이하)
- 5인 이내의 양형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
- 제3기의 경우 법관 위원 2인, 검사 위원 1인, 변호사 위원 1인, 법학교수 위원 1인, 총 5인으로 구성(여상훈 위원장, 이진만, 이건리, 이태섭, 이상원 위원)

다. 전문위원

- 제4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과 동일(15쪽 참조)

3. 제3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15회, 소위원회 회의 5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28회, 전문위원 팀별회의 4회, 자문위원 회의 3회 개최

(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15회)

차 수	일 시	안 건
34차	2011. 5. 2.	▪ 양형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등
35차	2011. 6. 14.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의결
36차	2011. 9. 16.	▪ 설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 ▪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안 의결
37차	2011. 11. 21.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차 수	일 시	안 건
38차	2011.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제5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39차	2012.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금융,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의결 ▪ 제6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40차	2012.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41차	2012.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42차	2012.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43차	2012.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
44차	2012.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공갈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
45차	2012.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제8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46차	2013.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의결
47차	2013.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1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48차	2013.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소위원회 회의(5회)

차 수	일 시	안 건
19차	2011.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5차 공청회 대상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0차	2012.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조치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 증권·금융,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차 수	일 시	안 건
21차	2012.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2차	2012.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23차	2012.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3) 공청회

- 양형기준안 제5차 공청회(2012. 3. 12.)
 - 증권·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 제6차 공청회(2012. 3. 26.)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 제7차 공청회(2012. 7. 1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 제8차 공청회(2013. 1. 21.)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나.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

(1) 제3기 양형기준 설정

- 위원회 제35차 회의(2011. 6. 14.)에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 죄를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
- 추진 경과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결정(2011. 6. 14.)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 전문위원 과제 분장
 - 1팀 :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공갈 범죄군
 - 2팀 : 증권·금융, 교통, 조세, 방화 범죄군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자료조사(2011.

8. 8. ~ 9. 9.)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자료조사(2012. 2. 27. ~ 4. 13.)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증권·금융,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1. 30.)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3. 5.)
 - 증권·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2012. 3. 12.)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2012. 3. 26.)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3. 6. ~ 4. 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6. 18.)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2012. 7. 16.)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6. 20. ~ 7. 20.)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2012. 6. 18.) 및 시행(2012. 7. 1.)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2012. 8. 20.) 및 시행(2012. 9. 1.)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12. 17.)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2013. 1. 21.)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12. 18. ~ 2013. 1. 18.)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2013. 2. 4.) 및 시행 예정(2013. 7. 1.)

(2) 제3기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증권·금융범죄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증재행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나) 지식재산권범죄

- 최근 대기업간의 특허소송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범죄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유형 분류

(다) 폭력범죄(상해, 폭행, 협박)

- 상해범죄의 경우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사법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대상을 선정하였고, 폭행 및 협박범죄의 경우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사람의 신체 불가침성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범죄이므로, 폭력범죄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양형기준을 마련

(라) 교통범죄

- 가벌성이 높은 형법 및 특별법상 교통형사범, 즉 협의의 교통범죄(대인 교통사고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마) 선거범죄

- 법률 규정,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 설정
-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으로 유형 분류

(바) 조세범죄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범죄발생빈도가 높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세범죄 유형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

- 행위유형에 따라 조세포탈 유형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대 유형을 분류하고, 조세포탈 유형은 일반 조세포탈과 특가법상 조세포 탈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분류한 후 다시 각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에 따라 세유형을 분류

(사) 공갈범죄

- 재산범죄이자 자유침해범죄라는 이중적 범죄 속성으로 인해 재산권 의 침해 정도(이득액) 및 의사결정의 침해 정도(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유형 분류

(아) 방화범죄

- 결과적 가중범 유무에 따라 일반적 기준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다만, 문화재방화와 산림방화는 그 특수 성 때문에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형량범위 설정

(3)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성범죄 양형기준 3차 수정

- 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2011. 10. 24.)에서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 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
- 추진 경과
 - 2011. 11. 29.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공개토 론회 개최
 - 2011. 11. 15. ~ 12. 9.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형에 관 한 설문조사 실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1. 12. 19.)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2011. 12. 20. ~ 2012. 1. 10.)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2012. 1. 30.) 및 시행(2012. 3. 16.)

○ 주요 내용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및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행 권고사유 신설
- 성범죄에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 엄격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나)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성범죄 양형기준 4차 수정

- 살인범죄 및 성범죄 관련 중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있었고, 2013. 6. 19.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령이 성년 대상 유사강간죄 신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치사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적을 반영함과 동시에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

○ 추진 경과

- 2013. 2. 4. 양형위원회 제46차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으로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 방안 검토’ 및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 방안 검토’ 의결
- 2013. 3. 4. 제65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2013. 3. 18. 제6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방안 심의 및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마련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3. 3. 25.)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2013. 3. 26. ~ 4. 10.)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2013. 4. 22.) 및 시행 예정(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3. 5. 15.,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3. 6. 19.)

○ 주요 내용

- 살인범죄
 - 권고 형량범위의 전반적 상향(참작동기 살인 유형 제외)
 -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 수정
 -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일반부정적참작사유에서 주요부정적참작사유로 상향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
- 성범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상향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 가중영역 상향
 - 신설된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개정 아청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상향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

Ⅲ. 제4기 양형위원회 구성

1. 양형위원회

(2013. 5. 7. 현재)

지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기 수	비 고
위원장	전 효 숙	1951. 2. 28.	연수원 7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원 (법관)	조 병 현	1955. 3. 2.	연수원 11기	서울고등법원장
	여 상 훈	1956. 7. 25.	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 경 란	1960. 12. 16.	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
	이 진 만 (상임위원)	1964. 3. 26.	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임 정 혁	1956. 8. 15.	연수원 16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 건 리	1963. 6. 11.	연수원 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박 상 훈	1962. 10. 20.	연수원 16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 광 수	1961. 12. 31.	연수원 17기	변호사
위원 (교수)	오 영 근	1956. 4. 25.		한양대 법대 교수
	서 보 학	1962. 3. 23.		경희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경험)	이 화 섭	1956. 2. 2.		KBS 보도본부장
	유 성 희	1968. 6. 16.		한국YWCA연합회사무총장

2. 전문위원

(2013. 5. 7. 현재)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소속	직위(직급)	비고
법원	구회근	1968. 1. 8.	2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부장판사	수석 전문 위원
	함석천	1969. 4. 3.	25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법부장판사	제1팀장
	최승원	1974. 4. 4.	30기	법원행정처	판사	제2팀
검찰	주용완	1970. 8. 28.	29기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제2팀장
	조석영	1971. 3. 17.	30기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제1팀
변호사	범현	1972. 4. 22.	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2팀
	최진녕	1971. 3. 6.	3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제1팀
교수/ 전문가	강우예	1973. 4. 9.	해당 없음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제1팀
	김혜정	1961. 8. 6.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제2팀
	이수정	1964. 2. 19.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제1팀
	이중교	1968. 1. 24.	28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팀
	이주원	1965. 6. 16.	21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팀
	이진국	1967. 12. 27.	해당 없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제1팀

3. 자문위원

(2013. 5. 7. 현재)

연번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1	법 학 계	배종대	1952. 7. 1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심희기	1956. 3. 20.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양현아	1960. 5. 1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4		정현미	1959. 9. 18.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언론계	권태선	1955. 4. 27.	한겨레신문 편집인
6		박보균	1954. 1. 24.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중앙일보 대기자)
7	교육계	손병두	1941. 8. 3.	전 서강대 총장 전 KBS 이사장
8		이광자	1943. 12. 10.	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9		이배용	1947. 1. 5.	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현 코피온 총재
10	시민단체	신종원	1961. 5. 14.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11		차경애	1944. 2. 7.	한국 YWCA연합회 회장

IV. 2013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 지원

- 제4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지원,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지원
-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2013년 6월 완료)
 - 양형기준 설정 작업 시작에 따른 양형자료조사 (2013. 7. ~ 8.)

2. 『2013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 2012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모든 양형기준을 담은 『2013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2013. 6. 각급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배포 예정

3. 『2012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2012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2013년도 활동계획을 담은 『2012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배포 예정